



DDA협상: 농업, NAMA 세부원칙 의장수정안의 평가와 시사점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실장 (jksuh@kiep.go.kr, Tel: 3460-1156)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bsong@kiep.go.kr, Tel: 3460-1208)
 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Tel: 3460-1136)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jgkim@kiep.go.kr, Tel: 3460-1093)

- 1. 의장 2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 2. 의장 2차 수정안의 평가
- 3. DDA 협상 전망
- 4.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 2008년 2월 27일 DDA 협상의 핵심의제인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ies) 의장수정안이 전 회원국에 배포되었고, 2008년 5월 19일 의장 2차 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DDA 협상은 의장 2차 수정안의 배포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간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 농업부문 의장 2차 수정안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나타난 주요 그룹의 이해를 조정한 절충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민감품목의 TRQ 증량이나 특별품목의 대우 등에 있어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병행 제시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 우리나라 입장에서 쌀 등 핵심품목의 특별품목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의장 2차 수정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품목별 보조계획을 사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 의장 2차 수정안에서 NAMA 부문의 관세감축공식 계수 크기로 선진국은 [7~9], 개도국은 [19~21], [21~23] 또는 [23~26]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동 제안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스티븐슨 의장은 회원국간 합의된 내용을 가져오지 않는 한 회의 진행은 무의미함을 강조함.
- ▶ 금번 수정안은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협상이 동 수정안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면밀한 협상대책 수립이 필요함.
 - 농업부문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시장개방 조건 및 수입급증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NAMA에서 sliding scale 방식의 성공여부는 개도국에게 부여하는 공식계수와 신축성의 크기 사이에 상쇄관계를 얼마나 적절히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음.
 - 개도국은 특정산업의 수출입을 특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감축공식 계수보다는 특정품목의 신축성 확보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리의 주종 수출 상품에 신축성 부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의장 2차 수정안 주요 내용

가. 농업

1) 국내보조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¹⁾ 감축

- 무역왜곡보조총액을 지급규모에 따라 3개 구간으로(600억 달러 이상, 100~600억 달러, 100억 달러 이하) 나누고 50~85% 감축하되, 이행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행초기 감축 부담을 높임.
- 개도국 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하고, 이행기간은 선진국보다 긴 8년으로 설정함.
- 1구간(600억 달러 이상)에는 EU, 2구간(100~600억 달러)에는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머지 선진국과 개도국은 3구간(100억 달러 이하)에 해당함.

표 1.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구간별 감축률

OTDS 지급규모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600억 달러 초과	[(75) (85)]	선진국의 2/3 [(33,3) (40)]
100~600억 달러	[(66) (73)]	
100억 달러 이하	[(50) (60)]	

나) 감축대상보조(AMS)

- 감축대상보조²⁾도 지급규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400억 달러 이상, 150~400억 달러, 150억 달러 이하) 구간별로 45~70% 감축하도록 되어 있음.
- 개도국 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하고,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보다 긴 8년을 부여하되, 초기 감축부담을 높임.

1) 무역왜곡보조총액 = 감축보조(AMS) + 최소허용보조 + 블루박스

2) 감축보조(AMS)는 농업생산이나 농산물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어 농산물 무역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때 해 상한을 정해 감축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임.

표 2. 감축대상보조의 구간별 감축률

AMS 규모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400억 달러 초과	70	선진국의 2/3 (30)
150~400억 달러	60	
150억 달러 이하	45	

■ 개별품목에 대한 AMS도 상한이 설정됨.

-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1995~2000년 통보된 개별품목에 지급된 AMS의 평균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미국은 1995~2004년 품목별 지원비율을 1995~2000년 품목특정 지원액에 적용하여 품목별 AMS 한도를 설정함.
- 개도국은 i)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품목특정 AMS 평균, ii)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동안 UR 농업협정 제6조 4항에 명시된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수준의 2배, iii) 도하라운드 이행기간 동안 해당 연도 총 AMS의 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품목특정 AMS 상한을 설정함.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³⁾와 블루박스(Blue Box)

- 최소허용보조 기준은 선진국의 경우 [(50) (60)]% 감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행은 [이행 첫 날부터 적용] 또는 [5년 균등 감축]을 제시하고 있음.
- 개도국의 최소허용보조 기준인하는 선진국의 2/3 수준([33,3], [40])%으로 하고, 선진국보다 긴 8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함.
- 블루박스⁴⁾는 총액 상한과 품목별 상한이 있음. 총액 상한은 선진국의 경우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은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행 첫 날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의 품목별 블루박스 상한은 1995~2000년에 지급된 블루박스 보조의 평균으로 설정되어 있음.

3)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보조이지만 지급규모가 적어 감축을 면제하기로 한 보조임. 기준은 선진국의 경우 해당품목 또는 농업총생산액의 5%이고, 개도국은 10%임.

4) 블루박스는 원래 생산제한하에 직접지불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생산제한이 없이도 고정불변의 기준과 단수에 근거하여 기준생산의 85%에 만 지불하는 보조정책도 포함됨.

- 미국만은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블루박스 총액 상한)에다 2002년 농업법에 의해 지급 가능한 품목별 최대 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품목별 블루박스의 ([110][120])%로 설정함.

2) 시장접근

가) 관세감축과 관세상한

- 관세크기별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진국은 50~73%,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인 33~49% 감축함.

-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균등 감축함.

표 3. 구간별 관세감축률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관세수준	감축률(%)	관세수준	감축률(%)
0~20%	50	0~30%	33.3
20~50%	57	30~80%	38.0
50~75%	64	80~130%	42.7
75% 이상	66~73	130% 이상	44~49

- 선진국은 추가적으로 평균 감축률이 [54% 이상 되어야 하며, 평균감축률 계산에는 민감품목⁵⁾뿐만 아니라 경사관세⁶⁾ 및 열대작물 감축률도 포함됨.

- 개도국은 반대로 평균감축률이 [36% 이하가 되어야 하며, 평균감축률 계산시 민감품목이 포함됨.

- 관세상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대신 고율관세품목을 일정 세번 이상 유지하면, TRQ 물량을 늘려주어야 하는 부담을 제시함.

- 관세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인 세번수가 전체 세번의 4%이상이면 민감품목 전체에 대해 국내소비량의 0.5%만큼 TRQ로 추가 증량함.

- 개도국은 150% 이상인 관세 세번수가 전체 세번의 5.3%(4%에 1/3 추가)인 경우에 적용함.

5)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감축률에서 일반 품목에 비해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품목

6) 농산물의 가공도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관세를 경사관세(혹은 가공도별 관세격차)라고 함.

나) 민감품목과 TRQ 증량

-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세번의 4~6%이고,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1/3 더 많은 전체 세번의 5.3~8%로 설정함.

-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세번수는 농산물 1,452개 세번을 기준으로 할 때, 선진국 기준으로 58~87개, 개도국 기준으로 77~116개 세번이 될 것임.

- 민감품목에는 일반 관세감축률의 1/3, 1/2, 2/3를 적용할 수 있으나 대신 TRQ를 증량시켜야 함.

- TRQ 증량은 관세감축 혜택을 본 정도에 비례하여 국내소비량의 3~6%를 낮은 세율 또는 무관세로 보장해야 함(일반 관세감축률의 1/3을 적용한 경우 국내소비량의 4~6%, 1/2을 적용한 경우 국내소비량의 3.5~5.5%, 2/3를 적용한 경우 3~5% 증량).

-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을 적용하는 이외 TRQ를 증량하지 않고 이행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

- (1안) 일반 감축률을 적용하되, 이행기간을 3년 연장

- (2안) 일반 감축률의 3/4를 적용하되, 이행기간을 2년 단축(단, 민감품목 수의 2/3에 대해서만 적용)

- TRQ 증량의 기준이 되는 소비량 산출방식은 최근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품목단위 소비량 계산방식과 함께 주로 수입국이 주장하는 세번 단위 소비량 계산방식을 첨부함.

다) 특별품목(SP)⁷⁾과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 특별품목 개수는 전체 세번의 8%를 기준으로 G330이 주장하는 최대 20%까지 지정을 팔호로 처리함.

- 특별품목의 관세는 평균 15%(최소12%, 최대2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 단, 특별품목의 40%에 대해서는 감축면제 가능성도 제시

- SSM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하여 G33 제안과 수출국제안 중 양자 택일하는 구조로 단순화함.

7)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로 관세인하를 최소화하고 수입쿼터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품목

- 다만 SSM의 연간 발동 가능 품목을 3~8개(HS 6단위 기준)로 제한하고, 추가로 부과 가능한 관세에도 제약을 둬.

3) 기타

- 모든 비종가세의 증가세나 종량세로 단순화하는 문제와 가공도별 관세차이를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열대 농산물의 대폭적인 자유화를 위해 추가적인 관세감축 등이 언급되어 있음.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1) 관세감축공식

- 선진국의 관세감축 조정계수는 [7~9]로 정하되, 개도국의 조정계수는 개도국 신축성 적용 수준과 연계하여(sliding scale 방식)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t_1 = \frac{\{a \text{ orb}\} \times t_0}{\{a \text{ orb}\} + t_0}$$

t_0 = 현 양허 관세율, t_1 = 최종 양허 관세율

a = [7~9]. 선진국의 조정계수

b = [19~21] 또는 [21~23] 또는 [23~26]. 개도국 조정계수, 신축성 적용 수준에 따라 3개의 조정계수 가운데 하나로 결정

- 조정계수 [19~21]을 선택한 개도국은 해당 품목이 자국의 비농산물 총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2~19]%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농산물 전체 세번의 [12~14]%까지 일반 감축률의 50%를 적용할 수 있음.
- 조정계수 [21~23]을 선택한 개도국은 해당 품목이 자국의 비농산물 총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농산물 전체 세번의 [10]%까지는 일반 감축률의 50%를 적용할 수 있음.
- 조정계수 [23~26]을 선택한 개도국은 신축성을 적용할 수 없음.
- 전체 세번의 35% 이하를 양허한 국가는 위의 공식 적용에서 제외되며, 대신 추가적인 양허를 해야 함.

- 특정 HS류(chapter) 전체에 대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도 수정·제시되었으며, 이는 추후 협상대상임을 명기함.

- 세부적으로 보면, HS 4단위 호(heading)에 속하는 품목 가운데 HS 6단위 소호(subheading) 기준으로 1/2 이상에는 신축성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또는
- 해당 HS 4단위 호 가운데 수입액 기준으로 50% 이상은 신축성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함.

- 한편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는 개도국은 조정계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세부원칙이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추후 협상대상으로 언급함.

- 이행기간은 선진국의 경우 [5~6]회에 걸친 균등감축을, 개도국은 [9~11]회에 걸친 균등감축 방식을 제시함.

2) 분야별 자유화(Sectoral approach)

- 분야별 자유화의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세부원칙(modalities)이 수립되면,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국은 세부원칙을 해당 분야에 적용할 것을 제시함.
- 세부원칙 수립 2개월 이내 각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회원국은 기 참여 국가 및 WTO 사무국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함.
- 세부원칙 수립 3개월 이내 각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국은 협상의 모든 성과를 조건부로 합의안에 포함시켜야 함.

3)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 협상의 향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세부원칙을 수립하면 협상을 개시하되, 세부원칙 합의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안을 제시해야 함.
- 세부원칙 합의 후 [1]개월 이내에 회원국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함.

4) 기타

■ 소규모취약경제국(SVEs)과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혜택

- 전세계 비농산물 교역의 0.1%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SVEs)의 경우(선진국 제외) 관세감축공식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관세감축 방식이 제시됨.
- 최빈개도국은 관세감축 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가입국(RAMs)

- 신규가입국은 의무적으로 상기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해야 하나, [2~3]년의 유예기간과 [2~5]회(매회 균등감축)의 추가적인 이행기간이 주어짐.

■ 비상호적 특혜(Non-reciprocal preferences)

- DDA 협상의 결과 핵심적인 수출 분야에서 받아들인 특혜를 침식당한 개도국의 경우 특혜를 부여한 선진국의 해당 품목 관세 감축기간을 [7~9]회(매회 균등 감축)로 늘리는⁸⁾ 등의 혜택을 부여함.

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만큼은 기준연도 및 품목특정 보조의 상한 설정에서 일정한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도 함.

- 그러나 면화보조금 감축은 기존 면화 4개국(부르키나파소, 베냉, 차드, 말리)의 입장(일반 품목보다 높은 감축률 및 낮은 상한 설정 등)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여 미국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기도 함.

- 시장접근 분야에서 일반 관세감축률은 국내보조와 같이 중간값을 확정·제시하였고, 민감품목의 TRQ 증량방식도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같이 제시하고 있어 절충점 마련을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됨.

- 특히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는 선진국(또는 수출국)과 G33의 입장을 병행 제시하여 향후 타협점 마련의 기초를 제시했다고 판단됨.

- 특별품목의 수는 상대적으로 미국 등 수출국(또는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축소기조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일부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의무 면제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 G33의 입장과 수출국들의 입장을 모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농업부문 세부원칙 2차 의장수정안에 대한 주요국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EU는 선진국에게 부여된 최소 감축률(54%)에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 가능성과 면화보조 감축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인도는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관심인 개도국 특별품목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과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가 기존에 비해 엄격해진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반면, G20 대표인 브라질은 수정초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선진국의 최소 감축률 54%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결국 의장 2차 수정안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나타난 주요 그룹의 이해를 조정한 절충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민감품목의 TRQ 증량이나 특별품목의 대우 등에 있어

2. 의장 2차 수정안의 평가

가. 농업

- 국내보조는 의장의 1차 수정안(2008년 2월)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농업보조감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일정한 융통성을 주는 한편 초기 감축부담을 강화한 점과 면화보조감축⁹⁾은 개도국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의장의 타협안 도출 노력을 엿볼 수 있음.

-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은 1차 초안에서 제시된 수치 가운데 중간값을 확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보조감축의 초기부담을 강화하여 개도국 입장을 반영

8) 상기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관세감축 횟수 또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6]회로 제한되나 이를 [7~9]회로 늘렸음을 의미함.

9) 지난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서아프리카 4개 면화생산국(부르키나파소, 베냉, 차드, 말리)은 미국, EU 등이 지급하고 있는 면화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면화수출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빈개도국의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DDA 협상에서 면화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및 시장장벽의 신속한 철폐를 요구하였음.

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입장을 병행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안 도출까지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 쌀 등 핵심품목의 특별품목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의장수정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쌀의 특별품목화는 쌀의 중도관세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¹⁰⁾

- 아울러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품목별 보조계획을 사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함.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NAMA 협상 최대 쟁점은 개도국에 적용될 관세감축공식 계수와 신축성 부여 정도로, 이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음.

- 의장은 이에 대한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수정안 배포 이후 2월 27일 sliding scale 방식을 포함한 8개 대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협상은 주로 sliding scale 방식을 위주로 논의하여 왔음.

- 2.27 의장 대안은 개도국 계수 21과 신축성 10%를 기준으로, 개도국 계수를 1만큼 증가(감소)하면 신축성 비율을 2% 감소(증가)하는 방식이었음.

■ 이번 2차 수정안은 관세감축공식 계수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안을 선택할 경우 개도국은 이전의 의장대안보다 큰 신축성을 부여받게 되는 반면 세 번째 대안은 기존보다 작은 신축성을 받게 되어 개도국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음 [표 4]에서 보듯이 이번 2차 수정안에서 첫 번째 대안을 선택하면 19~21 가운데 어떤 계수를 선택하더라도 이전보다 큰 신축성을 부여받을 수 있음. 두 번째 대안에서도 개도국 계수 21의 경우는 신축성이 이전과 동일하지만, 22 또는 23을 선택할 경우 신축성은 과거보다 각각 2% 또는 4% 커짐.

- 다만 2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세 번째 대안을 선택할 경우, 개도국의 신축성은 2.27 의장안보다 작아짐.

표 4. 개도국 관세감축공식 계수와 신축성 비교

	계수	2.27 의장안		2차 수정안(5.19)	
		세번비율	수입비율	세번비율	수입비율
1안 ¹¹⁾	19	14%	14%	12~14%	12~19%
	20	12%	12%		
	21	10%	10%		
2안	21	10%	10%	10%	10%
	22	8%	8%		
	23	6%	6%		
3안	23	6%	6%	0%	0%
	24	4%	4%		
	25	2%	2%		
	26	0%	0%		

■ 미국과 EU는 2차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관세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보다 낮은 관세감축률을 적용받는 개도국의 품목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미국은 분야별 자유화 참여에 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개도국에 주어지는 신축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EU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조정계수 간격이 지나치게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미국과 EU는 신규가입국으로서 중국에 부여된 유예기간 확대 등 특혜 부여에 실망감을 표명하고,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함.

■ 인도와 아르헨티나는 의장의 2차 수정안이 각료들이 합의한 DDA 협상에 시장개방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

- 인도는 2차 수정안이 도하각료선언을 통해 개도국에 부여하기로 약속한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 정신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아르헨티나도 2차 수정안이 향후 예상되는 수평적 협상

10) 특별품목의 개방조건에 따라 2015년 이후 쌀의 시장개방 폭이 결정될 것이므로, 특별품목의 개방조건은 쌀의 중도관세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됨. 쌀이 특별품목으로 선정되어 관세감축이 면제되면 쌀의 관세화유예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11) 의장 2차 수정안은 세번 비율과 수입액 비율에 대해 [12~14%와 [12~19% 등 범위(range)를 제시하고 있지만, 각 계수의 크기와 연결되는 신축성 값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여기서는 계수크기 범위가 3개인 것을 감안하여, 계수의 최저치(최고치)와 신축성의 최고치(최저치)를 일대일 대응시키고, 계수 중간값(20)인 경우 신축성의 중간값을 연결함.

(horizontal process)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2차 수정안은 지난 2008년 2월의 1차 수정안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1차 수정안에 비해 대체적로 개도국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3. DDA 협상 전망

- 의장의 2차 수정안 배포 이후 5월 26일 주간에 열린 주요국 비공식협상에서 농업과 NAMA 모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음.

- 특히 미국은 농업과 NAMA의 2차 수정안이 오히려 시장개방의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브라질, 중국, 인도와 같은 선진 개도국은 관세감축에서 실질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반면 개도국들은 미국 무역왜곡보조총액의 효과적 감축을 주장하면서, 개도국 특별품목과 공산품의 관세감축에서 개도국에게 더 좋은 신축성 부여를 강조하며 2차 수정안의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5월 29일 2007년 농업법이 의회를 통과하자 많은 개도국들이 미국의 농업보조 감축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6월 중순경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농업과 NAMA 간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 주고받기 협상인 '수평적 협상(horizontal process)'은 당분간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하며, 설령 개최된다고 해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최근 스티븐슨(Stephenson) NAMA 협상그룹 의장도 주요국간 입장차이가 오히려 더 커진 실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각료급 회의 소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결국 실무고위급(SOM) 수준의 수평적 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DDA 협상의 큰 진전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됨.

- 라미 사무총장은 6월 말 이전에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을 타결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나, 의장의 2차 수정안 배포이후 지금까지의 협상진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라미 사무총장의 이와 같은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4. 정책적 시사점

- 의장의 2차 초안은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향후 협상이 2차 수정안에 기초할 것임은 분명함.

- 따라서 2차 수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기초한 효과적인 협상전략 수립이 중요함.

- 농업분야 2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해 볼 때, 우리나라와 관련된 농업보조의 감축은 현 수준을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개별 농산물에 대한 보조도 품목별로 상한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 상한은 감축보조를 통한 상한, 최소 허용보조를 통한 상한, 블루박스 보조를 통한 상한이 존재하는바, 개별 농산물별로 어떠한 형태의 보조상한이 향후 우리 농정의 운용에 유리한지를 미리 파악해야 함.

- 민감품목의 선정은 TRQ 증량 수준을 고려하되, 특별품목으로 활용될 수 있음도 동시에 고려해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특별품목의 선정도 사전에 결정하되, 쌀의 중도관세화 방안을 감안해야 함.

- 관세상한 설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국내 농업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고율관세 농산물(예: 매니옥)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필요함.

- 한편 NAMA에서 sliding scale 방식의 성공여부는 개도국 관세감축공식 계수의 크기와 신축성 부여 간의 상쇄관계(trade-off)를 얼마나 적절히 설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음.

- 개도국은 특정 산업에 수출과 수입이 특화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관세감축계수의 크기를 낮추어 전체적으로 공산품 관세를 낮추는 한편, 특정 산업의 보호는 신축성을 최대로 이용하려고 할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특정품목이 관세인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축성 부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금까지 논의에 기초하면 이번에 배포된 2차 의장 수정안에서 제2안이 향후 협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큼.
- 가령 제2안의 개도국 관세감축 계수로 21을 선택하고 신축성으로 12%를 선택할 경우 DDA 협상타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후생은 단기에 약 27억 달러, 장기에 약 66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¹²⁾
- 그러나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방안은 제3안임. 예를 들어 개도국 관세감축 계수 26과 신축성 미부여의 경우는 위의 예에서 보다 국민후생을 약 3.3% ~5.9% 향상시킴.
- 반면 제1안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임. 이 방식은 개도국에게 더 낮은 관세감축률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신축성 부여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이익을 반감시킴.
- 결론적으로, NAM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제2안이 관철되도록 협상에 임하되, 수입량 제한 비율을 최소한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임. KIEP

12) 농업개방안은 반영하지 않고, NAMA sliding scale 방식만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임.